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인사위원회공고 제2026-1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한시임기제공무원(속기)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한시임기제공무원(속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속기	지방한시임기제 8호	1명	1년	노원구의회	1. 속기 회의록 작성 및 의사 업무 지원 2. 속기 관련 장비 유지관리 등

2.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및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 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분	자격기준
속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속기 관련 실무 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6. 9.(화) ~ 6. 11.(목) 3일간

나. 접 수 처 : 노원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노원구청 8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의회 8층 의회사무국 의정팀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노원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우편접수시 5,000원 상당 우체국 통상환증서 반드시 송부)

※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송부 후 반드시 확인 전화요망(02-2116-3386)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차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일 자	시간 및 장소	
2026. 6. 12.(금)	2026. 6. 15.(월)	2026. 6. 18.(목)	노원구의회 내 (추후통보)	2026. 6. 19.(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서류전형

- 접수된 응시원서 등 관련 제출서류 확인 후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를 통한 추가 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최종결정

나. 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합격자는 고득점자로 하며, 신체검사 및 사전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에 의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의회 홈페이지 공고

5. 근무 조건 및 보수

가. 임용예정일 : 2026. 7. 1.(수)

※ 임용일자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임용기간 : 2026. 7. 1. ~ 2027. 6. 30.

다. 근무조건 : 주 35시간 근무

라.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 2에서 정하는 봉급 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주 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구 분	근무시간	봉급기준액	주35시간 환산 봉급액
한시임기제 8호	주35시간 (1일 7시간)	2,378,300원	2,081,010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가입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 후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아.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자. 자격증 사본 1부(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차.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경력증명) 제출

카.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구청 2층 재무과에서 구매)

※ 수입증지 구매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우체국에서 5,000원 상당 통상환증서 구입 후 송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시험일정 등이 변경됨)
- 사.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자. 기타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 02-2116-3386)